##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0

발의연월일 : 2020. 7. 21.

발 의 자:최혜영·고영인·박성준

양경숙・신동근・맹성규

인재근 • 이광재 • 이상헌

정청래 • 우원식 • 이탄희

이원택・윤재갑・이수진(비)

양이워영 · 남인순 · 이병훈

김예지 · 김경만 · 오영화

정태호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 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동행,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장 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신분조회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가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 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 등의 신분을 조회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장 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9조의7 및 제59조의1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7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15(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한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
		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
		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
		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
		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u>다.</u>
<u>&lt;신 설&gt;</u>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
		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u> &lt;신 설&gt;</u>		제59조의15(장애인학대정보시스
		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위탁할 수 있다.